

제5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1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5.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2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초래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 또는

2) 제2.4조(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2.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이나 수량제한 중 어느 것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허용 가능한 형태가 아님을 양해한다.

제5.3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

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6. 당사국은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2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했을 관세율이 된다.

제5.4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초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제5.2조제1항가호 또는 제5.2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조치의 형태를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부여한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5.3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5.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제5.3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5.5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 보상 방법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져 왔고, 그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 행사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5.6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5.7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조제5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 협정 제2조제4항제2호의 가중평균 가격비교,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 중 어느 것이든,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기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상의 마감기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4. 반덤핑 협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늦어도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규정된 절차적 규칙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및 특히 그 제5항,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조사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제8항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조사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대한 설명

나. 이해당사자가 조사 당국에 제출하지 못한 정보, 그리고

다. 조사 당국이 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사실

제5.9조

약속

1.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수입 당사국은 가격 약속이나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수입 당사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수입 당사국에 위치한 수출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수입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수입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

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속 제안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과 그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5.10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종료 후 조사

한쪽 당사국은 재심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5.11조

누적적 평가

반덤핑 협정 제3조제3항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5조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과 수입 상품 및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5.12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8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